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수산물질병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수산물질병 관리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19499호, 2023. 6. 20. 공포, 2024. 6. 21. 시행)됨에 따라, 시·군·자치구에 수산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물질병의 발생 예방·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,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산물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수산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확대(안 제4조)

- 1) 수산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해양수산부와 시·도지사 하던 것을 시장·군수·구청장도 수산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필요
- 2) 수산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추가 및 수산물방역관 임명·위촉권자 지정함
- 3) 수산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도 수산물방역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수산물 질병의 확산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

나. 권한의 위임 및 위탁(안 제19조)

- 1) 신설되는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임 사무를 정함
- 2) 법 제21조의2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확인·점검, 수산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, 질병관리기준 미 준수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조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
- 3) 법 제25조의2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법 제25조의3제1항과 제4항에 따른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및 수입중단 조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

다. 과태료의 부과기준(별표5)

- 1) 국민권익위원회의 「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」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및 누적회차 적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
- 2) [별표 5]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및 누적회차 적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
- 3)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같다)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을”을 “같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의 수산방역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제2항제5호의2 중 “위축”을 “위축·임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의3, 제10호의4 및 제10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3. 법 제21조의2에 따른 수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, 확인·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

10의4. 법제25조의2에 따른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

10의5. 법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및 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수입중단 해제 시설에 대한 정보의 공개

별표 5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2호파목 위반행위란 파목 중 “법

제37조의11”을 “법 제37조의11제1항”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수산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”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의 수산물방역수행기관을 말한다.	제4조(수산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같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의 수산물방역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---.
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방역관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	<삭 제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 략)	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5의2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방역사의 위촉	5의2. ----- ----- 위촉·임명

6. ~ 9. (생 략) 9의2. 삭 제 <u><신 설></u>	6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(생 략) 10의2. · 10의3. 삭 제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9의3. <u>법 제21조의2에 따른 수</u> <u>출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,</u> <u>확인·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</u> <u>른 조치</u> 10. (현행과 같음) 10의4. <u>법 제25조의2에 따른 해</u> <u>외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</u> 10의5. <u>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</u> <u>른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</u> <u>현지실사 및 제4항에 따른 수</u> <u>입중단 조치 및 수입중단 해</u> <u>제 시설에 대한 정보의 공개</u>
11. ~ 19. (생 략) ③ ~ ⑥ (생 략)	11. ~ 19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25